

울산지방법원 2020. 11. 26 선고 2019나1523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울산지방법원 2020. 11. 26 선고 2019나15236 판결

울산지방법원 2019. 9. 18 선고 2018가단25655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

피고, 피항소인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

담당변호사 김병수

변론 종결 2020. 10. 22.

판결 선고 2020. 11. 26.

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. 9. 18. 선고 2018가단25655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6,325,4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정재우

판사김정성

판사노민식